

# 여성 노예가 법정에서 싸우는 법

권윤경\*\*

프랑스 7월왕정기 “비르지니 재판”과  
노예 가족, 1832-1847\*

**초록**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때 식민지 노예제를 폐지했으나 나폴레옹이 이를 번복하여 1848년에야 최종적으로 노예해방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가가 노예해방을 선언하기 전에도 노예들은 일상에서 자유를 향한 크고 작은 투쟁을 계속했다. 프랑스의 7월왕정(1830~1848)은 점진적 노예제 폐지를 위해 노예들의 개인별 해방을 지원하는 각종 개혁 법령을 입안했다. 많은 여성 노예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 특히 자녀들의 자유를 찾고자 다양한 전략을 짜냈는데 그중 하나가 소송이었다. 비르지니 재판(1834~1845)은 과들루프의 해방 노예 비르지니가 노예 가족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흑인법 제47조를 이용하여 자녀의 자유를 쟁취한 드문 예였다. 대농장주의 아성인 식민지 법원에서 패소한 비르지니는 본국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본국 노예제폐지론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비르지니 재판의 승리는 전후로 식민지에 큰 과급효과를 미쳐 비슷한 ‘자유 재판’이 늘어났다. 이 글은 노예제에 관한 법령과 대서양 양쪽의 사법 체계, 본국의 노예제폐지운동, 노예제하의 젠더와 가족, 이 세 교차로 사이에서 비르지니 재판이 벌어진 사회적 맥락을 재구성하고, 여성 노예들이 어떻게 법의 틈새를 찾아내 자유를 쟁취하려 했는지 고찰한다.

**주제어** 비르지니 재판, 노예제, 젠더,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프랑스 7월 왕정, 파기원, 여성 노예, 노예 가족

\* 이 논문은 2024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강연-집필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서양사학전공 부교수

## 1. 서론: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노예제와 비르지니 재판

1845년 12월 9일, 푸아티에 법원은 프랑스령 서인도제도의 과들루프에 사는 여성 해방 노예 비르지니(Virginie)가 자신의 자녀 두 명을 노예로 소유한 주인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했다. 법원은 1685년 공포된 흑인법(Code Noir) 제47조가 노예의 가족을 해체할 수 없게 규정했으므로 어머니가 해방되면 자녀도 같이 해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의 노예제폐지론자와 식민지의 노예들은 역사적인 판결에 환호했지만, 이 승리는 비르지니가 9년 동안 과들루프에서 프랑스 본토까지 법정을 6번 거치는 우여곡절을 거쳐 힘겹게 얻어낸 것이었다. 이 글은 노예제에 관한 법령과 사법 체계, 프랑스 본국의 노예제폐지운동, 노예제하의 젠더와 가족, 이 세 가지 문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통칭 ‘비르지니 사건’(Affaire Virginie)이 벌어진 법적·사회적 맥락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 노예들이 어떻게 저항의 틈새를 찾아내고 자유를 쟁취하려 했는지 살펴본다.

프랑스는 17세기부터 식민지에 아프리카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도입했고, 18세기에는 영국과 더불어 대서양 최대의 노예제 제국이 되었다. 사탕수수 대농장이 즐비한 서인도제도의 ‘설탕 섬,’ 특히 생도맹그,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세 섬이 프랑스 식민지 체계의 중심이었다. 18세기 말 번영의 정점에 이르렀던 노예제는 프랑스혁명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가장 부유했던 생도맹그에서 1791년부터 대대적인 노예 반란과 혁명전쟁이 동시에 벌어졌다. 프랑스의 혁명의회는 식민지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여 1794년 사상 초유로 법령을 통한 노예제의 전면적 폐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곧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 식민지에 노예제를 복구하면서 1차 해방령은 취소되었다. 생도맹그는 나폴레옹의 원정군에 맞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인 끝에 승리하여 아이티로 독립했지만, 다른 식민지에는 1802년 노예제가 복구되었다.<sup>1</sup>

1 나폴레옹 전쟁 후 프랑스에 남은 노예제 식민지는 서인도제도의 마르티니크와 과들루프,

1848년 2월 혁명으로 수립된 제2공화국이 최종적으로 노예해방령을 선포하기까지 노예들은 반세기를 기다려야 했다.

혁명 후 영국과 미국에서는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운동이 대중화되었지만, 프랑스의 반노예제 운동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부르봉 왕가가 돌아온 왕정복고 시대(1814~1830)에 노예제폐지론은 1차 해방령이 선포되었던 공포정치 시대와 동의어로 여겨졌고, 식민지 농장주와 본국 항구도시의 대상인들로 이루어진 친노예제 세력은 노예해방은 또 다른 아이티혁명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830년 7월 혁명으로 복고왕정이 무너지고 루이-필리프의 자유주의적인 입헌왕정, 통칭 7월왕정(1830~1848)이 들어섰다. 게다가 1834년 영국이 노예해방령을 선포하자 프랑스도 큰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같은 해에 하원의원, 법률가, 언론인 등으로 이루어진 소수의 엘리트 자유주의자들이 프랑스노예제폐지협회(Société française pour l'abolition de l'esclavage; 이하 SFAE)를 수립하면서 프랑스에서도 미약하나마 조직적인 반노예제 운동이 시작되었다.<sup>2</sup>

본국의 개혁론자들이 노예제 문제에 접근한 주요 통로는 법이었다. 노예제의 즉각적, 전면적 폐지는 너무 위험하고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 정부와 온건파 노예제폐지론자들은 노예의 처지를 '개선'(amélioration)하고 그들을 '교화'(moralisation)하는 법령을 통해 노예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자 했다.

---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 인도양의 부르봉 섬(지금의 레위니옹), 아프리카 세네갈의 몇몇 거점 등이었다. 그중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가 노예의 수가 가장 많은 식민지였고 두 섬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비슷했다. 이 논문은 두 섬의 역사에 집중한다.

- 2 이에 관한 내용과 참고문헌은 권윤경(2013), 「프랑스 혁명과 아이티 혁명의 역사적 유산,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지 개혁론: 프랑수아앙드레 이장베르의 정치 경력을 통해 본 프랑스의 노예제폐지론, 1823-1848」, 『프랑스사 연구』 28, pp. 85-121. 프랑스 반노예제 운동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Nelly Schmidt (2000), *Abolitionnistes de l'esclavage et réformateurs des colonies: 1820-1851*, Paris: Karthala; Lawrence C. Jennings (2000), *French Anti-Slavery: the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in Fr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tricia Motylewski (1998), *La Société française pour l'abolition de l'esclavage*, Paris: L'Harmattan.

이 법들은 유색인 자유민과 백인 사이의 법적 차별 철폐, 노예의 법정 증언 능력 인정, 노예의 개인별 해방(*affranchissement, manumission*)<sup>3</sup> 지원, 노예들 사이의 결혼 장려, 미성년 노예에 대한 종교 교육 강화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 정책을 집대성한 것이 1845년 마코 법(*lois Mackau*)이었지만, 이는 개혁파와 보수파 양쪽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타협으로 평가되었다.<sup>4</sup>

친노예제와 반노예제 세력 사이에 더 극적인 대결이 벌어진 곳은 법정이었다. 왕정복고 시대에 반동적인 정책이 강화되면서 법정이 반대파의 저항 공간으로 떠올랐고, 혁명 이후 법정 의사록이 공개되고 소송 자료와 법정 뉴스가 출판되면서 소송은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 이장베르(*François-André Isambert*), 뒤팽(*André Dupin*), 가틴(*Alphonse Gâtine*) 등 SFAE에 소속된 자유주의 성향의 사법관들이 자리 잡으면서 노예제를 옹호하는 식민지 법원과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이들은 프랑스혁명과 아이티혁명이 표상하는 급격하고 폭력적인 노예해방의 대안으로서 자유와 해방은 혁명으로 급작스레 온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법 전통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비르지니 재판은 파기원에서 승소한 대표적인 ‘자유 재판’(*procès de la liberté*)이었다.

그러나 재판 자체의 명성에 비해 비르지니 재판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내용도 대부분 비르지니를 대변한 검사들의 활약과 반노예제 운동에 파기원이 기여한 바에 치중되어 있다.<sup>5</sup> 이러한 연구들은 프랑스의

3 주인이 노예를 개별적으로 해방하는 것으로, 이와 비교해 노예제의 법적 폐지(*abolition*)에 의한 전면적 해방은 *émancipation*으로 지칭되었다.

4 마코 법에 관해서는 Jennings (2000), pp. 193-228.

5 대표적으로 Pierre Chevalier and Peimane Ghaleh-Marzban (Eds.) (2014), *La Cour de cassation et l'abolition de l'esclavage*, Paris: Dalloz, 최근의 새로운 경향을 대변하는 연구로 Deirdre Lyons (2024), ““They Are Free with Me”: Enslaved and Freed Women’s Antislavery Lawsuits in the French Antilles, 1830-1848,” *French Historical Studies* 47(3), pp. 365-397.

법과 자유의 전통이 노예의 권리를 수호했다는 전통적인 서사를 재생산한다. 정작 그 법률이 애초에 노예제를 승인하고 수세기 동안 유지했으며, 과거기를 통해 자유를 얻은 노예는 극소수에 불과했음은 간과한 채 말이다. 결정적으로 노예를 도운 자비로운 백인 법률가가 재판의 주인공으로 형상화되는 가운데 정작 자녀의 자유를 위해 온갖 역경을 뚫고 싸운 비르지니의 모습은 배경으로 사라진다.

법을 이용하여 자유를 추구한 것은 노예들도 마찬가지였다. 스콧(Rebecca Scott)이 이야기하듯이 노예는 인간인 동시에 재산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가 주인과 국가 사이에 나뉘어 있었기에 노예제 사회에서 법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었다.<sup>6</sup> 본국의 일반법과 식민지의 특별법 사이에서, 그리고 식민지 개혁 법령의 실행을 두고 갈등하는 권력 집단들 사이에서 노예들은 자신과 가족의 자유를 주장할 기회를 포착하고자 했다.<sup>7</sup> 본국 의회와 법정에서 벌어지는 노예제 관련 논의와 주변 식민지의 상황에 관해 노예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음은 이미 많은 연구가 입증했다.<sup>8</sup> 1830년 7월 혁명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혁명의 기억을 떠올린 노예들은 해방을 기대하고 많은 소요를 일으켰으며, 1834년 영국 노예해방령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두 섬은 크게 동요했다. 특히 뉴스는 대서양을 건너 여러 입을 거치며 희망과 기대를 담아 부풀려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1830년대부터 정부가 노예제 개혁 정책을 여러 차례 입안하고 논의하면서

6 Rebecca Scott (2011), "Slavery and the Law in Atlantic Perspective: Jurisdiction, Jurisprudence, and Justice," *Law and History Review* 29(4), pp. 922-923. 노예제와 법의 관계에 관한 비교사적 관점을 위해서는 David Tananhaus (2011), "Law, Slavery, and Justice: A Special Issue," *Law and History Review* 29(4), p. v 참조.

7 프랑스 식민지 법체계는 본국과 현지 사이에 계속된 교섭의 결과로 "법적 다원성"(legal pluralism)에 기반해 있었고, 19세기 이전에도 노예들은 이를 이용했다. Nancy Christie, Michael Gauvreau and Matthew Gerber (Eds.) (2020), *Voices in the Legal Archives in the French Colonial World: "The King is Listening"* London: Routledge 참조.

8 대표적으로 줄리어스 스콧(2022), 권윤경 역, 『모두의 바람: 아이티 혁명의 시대 아프리카 혁명의 조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노예들은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농장주들은 이러한 뉴스가 들릴 때마다 노예들이 반항적 모습을 보인다고 불평했다.<sup>9</sup> 그리고 여기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한 것은 바로 비르지니아와 같은 여성 노예들이었다.

그러나 사료를 통해 여성 노예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다. 노예제 사회에 관한 사료 대부분은 백인들이 생산했고, 특히 여성 노예는 노예제와 젠더 권력에 의해 이중으로 침묵되었다. 노예는 법률상 재산이라서 성씨도 없고, 출생했을 때 주민 명부에 등록되지도 않았다. 대부분 문맹이고 주인에게 속마음을 숨겨야 하는 노예들이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sup>10</sup> 주인의 유언장과 상속 문서, 매각 증서, 해방 문서, 재판과 심문 기록 등이 그들의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단편적인 실마리가 될 뿐이다. 비르지니아 재판은 본국 여론에 오르내리며 유명해져서 이례적으로 많은 문서 증거를 남겼다. 그러나 모든 내용은 비르지니아의 대변인들이 전달할 뿐 그가 직접 발화한 내용은 찾을 수 없고, 구체적인 생애사도 알기 어렵다.<sup>11</sup> 결국 여성 노예처럼 사회 최하층에 있던 이들의 삶을 연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추측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엇이 결코 알 수 없는지 사료의 행간과 공백을 직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sup>12</sup>

9 마르티니크의 대농장주였던 드살은 일기에서 여러 번 이러한 불만을 토로했다. Pierre Dessalles (1980-1987), *La Vie d'un colon à la Martinique au dix-neuvième siècle*, 4 vols., Fort-de-France: Désormeaux.

10 영미권의 반노예제 운동에서는 에퀴아노(Olaudah Equiano)의 자서전과 같은 해방 노예들의 증언 문학이 발달했지만, 프랑스에서는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렵다.

11 ‘프랑스는 자유민의 땅’이라는 원칙에 호소하여 ‘자유 소송’을 벌인 부르봉 섬의 남성 노예 피르시(Furcy)의 재판을 다룬 피바디의 책은 노예 가족의 삶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보여준다. Sue Peabody (2017), *Madeleine's Children: Family, Freedom, Secrets and Lies in France's Indian Ocean Colon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2 문서고에서 여성 노예의 목소리를 찾아내려는 (혹은 그 근본적 어려움에 관한) 작업으로 Saidiya Hartman (2008), “Venus in Two Acts,” *Small Axe* 12(2), pp. 1-14; Rebecca Scott and Jean Hébrard (2012), *Freedom Papers: An Atlantic Odyssey in the Age of Emancip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arisa Fuentes (2016), *Dispossessed Lives: Enslaved Women, Violence, and the Archive*, Philadelphia: University of

이 글에서는 비르지니 재판뿐만 아니라 비슷한 ‘자유 소송’을 제기한 여성 노예의 경험을 집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르지니 재판에 관한 정황 증거를 보충하고 이를 둘러싼 노예들의 사회적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 2. 전환기의 식민지 노예제와 개혁 정책의 영향

노예제에 대한 저항의 역사는 그동안 주로 노예해방령과 같은 국가적 정책이나 아이티혁명과 같은 무장 반란에 방점을 찍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직접 노예제폐지운동에 참여하거나 무장투쟁에 나서지 못했던 노예들, 특히 여성 노예 대다수를 저항의 서사에서 삭제할 뿐 아니라 1802년과 1848년 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저항의 모습을 지워버린다. 혁명 전에도 후에도 노예들은 가만히 앉아 국가나 주인이 해방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노예들의 일상에서 벌어졌다. 우리가 문서로 알 수 있는 것은 법적 자유의 기록뿐이지만 실상 식민지에서 자유와 예속은 두 개의 반대항이 아니라 일종의 스펙트럼처럼 복잡한 양상으로 펼쳐졌다. 주인이 해방 등록세를 내지 않거나 구두로만 해방하여 ‘사실상 자유민’(libre de fait 혹은 libre de savane)으로 사는 노예, 임금 일부를 내며 주인으로부터 반쯤 독립해서 사는 노예, 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산간 지역에서 사는 도망 노예도 많았다.<sup>13</sup>

19세기 들어 자유의 통로로 점차 중요해진 것은 개인별 해방이었다. 해방의 방식에는 주인이 금전적 대가 없이 해방하는 것, 노예가 별개의 경제

---

Pennsylvania Press: Sophie White (2019), *Voices of the Enslaved: Love, Labor, and Longing in French Louisian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3 많게는 3,000프랑에 달하던 자유민 등록세는 주인에게 큰 부담이라 해방만 하고 자유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831년 3월 1일의 법으로 등록세가 폐지된 후 해방이 더 쉬워졌다.

활동을 통해 몸값을 치러 속량(贖良)(rachat, rédemption)하는 것, 돈이나 노동을 적립해 몸값을 치르는 것(pécule) 등이 있었다. 주인이 대가 없이 해방하는 경우는 보통 자기 아이를 낳은 여성 노예와 아이, 혹은 평생 주인집에 봉사한 노년의 유모나 사용인 여성들이었다. 여성 노예와 미성년 아이들의 해방 비율이 성인 남성보다 더 높았던 것은 여성 노예가 항상 꺾어야 했던 성적, 감정적 착취를 자유를 위한 복잡한 교섭으로 전환한 결과였다.<sup>14</sup>

1830년 전까지 전체 노예 인구 대비 이러한 해방의 비율은 극히 낮았다. 그러나 7월왕정이 해방을 지원하는 여러 개혁 법령을 통과시킨 이후 매년 해방 노예의 수가 늘어났다. 이중 상당수는 ‘사실상 자유민’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1832년 7월 12일의 왕령에 따라 해방 문서를 받은 경우였다. 1830~1847년 사이 마르티니크에서 공식적으로 해방된 2만 64명 중 여성이 8,158명, 남성이 4,878명, 미성년이 7,028명이었고, 다른 식민지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sup>15</sup> 미성년의 해방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하면 해방을 주도한 것은 여성 노예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재봉사, 세탁부, 요리사, 가정부, 유모, 가내 하인 등 기술로 몸값을 저축할 수 있거나 주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노예들이 해방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유색인 자유민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1847년 정부의 인구 통계를 보면 마르티니크는 총인구 12만 1,130명 중 백인 9,542명, 유색인 자유민 3만 8,729명, 노예 7만 2,850명이었고, 과들루프는 총인구 12만 9,109명 중 자유민 4만 1,357명(백인과 유색인 구분 없음), 노예 8만 7,752명이었다.<sup>16</sup> 1833년 4월 24일의 법이 유색인 자유민에 대한 법적·정치적 차별

14 Pamela Scully and Diana Paton (2005), "Introduction," *Gender and Slave Emancipation in the Atlantic Worl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 8.

15 Ministère de la marine et des colonies (1851), *Tableaux de population, de culture, de commerce et de navigation, formant pour l'année 1847*, Paris: Imprimerie Royale, pp. 10-11.

16 Ministère de la marine et des colonies (1851). '유색인 자유민'(gens de couleur libres)은 해방 노예와 혼혈로 태어난 자유민을 합친 개념으로 식민지에서 통용되던 명칭이다.

을 철폐함에 따라 이들은 명목상 백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해방 노예와 구분하여 ‘옛 유색인 자유민 계급’이라고 불리게 된 집단, 즉 1833년 이전부터 자유민이었던 유색인들은 막 해방된 이들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노예들이 해방을 위해 싸울 때 이들 유색인 자유민 공동체의 도움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식민지 농장주 세력은 7월왕정의 개혁 정책에 거세게 저항했고, 그 거점은 식민지 사법부였다. 두 섬에는 도시마다 있는 1심법원(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과 각 섬의 행정 수도에 있는 2심법원인 국왕법원(cour royale de la Martinique와 cour royale de la Guadeloupe)이 있었다. 식민지 사법관은 판사, 기소청의 검사장(procureur général)과 국왕검사(procureur du roi), 그 외 보조 법관을 아울렀다. 이들은 본국과 달리 법무부가 아니라 식민해군부가 지명했고, 대부분 섬 출신의 노예 소유주이거나 농장주들과 혈연, 결혼, 투자 관계 등으로 묶여 있었다. 복고왕정 말기부터 본국 출신 사법관을 보내 식민지 사법부를 부분적으로 몰갈이하려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7월왕정 이후 유색인 자유민과 노예가 법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노예 소유주의 가혹 행위에 대한 소송이 늘어났지만, 절대다수는 무혐의나 불기소로 풀려났다.<sup>17</sup> 프랑스의 대표적인 노예제폐지론자 쉴세르(Victor Schoelcher)는 이를 두고 “자기 대농장에서 최고 지배자인 농장주는 동시에 검사, 판사, 집행자다.”라고 말했다.<sup>18</sup>

이에 따라 파리에 있는 3심법원이자 최고법원인 파기원의 역할이 중요

17 Schmidt (2000), pp. 185–190; Martine Fabre (2011), “La place de la Cour de cassation dans la construction d’un droit aux colonies”, *Clio@Themis* 4, <http://journals.openedition.org/cliiothemis/1385> (접속일: 2024. 12. 10.); Teresa Göttl (2024), “Trials of Enslavers in Former French Colonies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Testimonies of the Enslaved between Gratitude and Fear,” *Slavery & Abolition* 45(1), pp. 117–134.

18 Victor Schoelcher (1833), *De l’esclavage des noirs et de la législation coloniale*, Paris: Paulin, p. 22.

해졌다. 구체제 때부터 프랑스의 지배자들은 봉건제의 유산인 지역 간 법률적 다양성을 타파하고자 했고, 그 전통 위에서 1804년 나폴레옹이 사법 체계의 최정점에 세운 것이 파기원이었다. 파기원은 하급법원의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프랑스 전체의 법적 통일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파기원은 지방 국왕법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연장선상에서 1829년부터 식민지로 권한을 확대했다.<sup>19</sup> 이후 노예제로 대표되는 식민지의 특별법 체계와 이를 수호하는 식민지의 과두정이 본국의 법과 마찰을 빚음에 따라 노예들이 개입할 틈이 생겨났다.

여기에는 18세기부터 이어진 전례가 있다. 18세기 후반 주인이 본국으로 데려온 노예 중 일부가 중세 때 농노해방을 위해 내린 왕령을 활용하여 ‘예속민은 프랑스 땅에 발 딛는 순간 자유로워진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고등법원으로부터 해방을 얻어냈다.<sup>20</sup> 북고왕정 시대에는 유명한 ‘비세트 사건’이 있었다. 마르티니크의 유색인 자유민이었던 비세트(Cyrille Bissette)와 동료들은 식민지의 인종차별에 반대했다가 식민지 법정에서 낙인형을 받고 프랑스로 추방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장베르의 도움을 받아 파기원에 항소하여 원심 파기를 받아냈다. 비세트는 이후 파리에 거주하며 유색인 자유민들의 비공식 대표로 노예제폐지운동에 앞장섰다.<sup>21</sup>

이에 따라 노예 소유주의 아성인 식민지 법원에서 패소한 유색인 자유민과 해방 노예 중 몇몇은 대서양을 건너 파기원에 항소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SFAE와 노예제폐지론자들은 파기원이 18세기부터 이어진 자유와 해방을 위한 프랑스의 위대한 법 전통을 대변한다면서 ‘자유 재판’ 내용을 신

19 Jean-Paul Jean (2021), “La Cour de cassation et les juridictions coloniales avant l’abolition de l’esclavage,” *Histoire de la justice* 31(1), pp. 127-142.

20 Sue Peabody (1996), “*There Are No Slaves in France*”: *The Political Culture of Race and Slavery in the Ancien Régi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이러한 예는 영국의 1772년 서머셋(Somerset) 재판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 이에 관해서는 권윤경(2013),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에서 프랑스로: 시릴 비세트의 반노예제 투쟁에서 나타난 횡대서양적 해방의 기획, 1823-1849」 『서양사론』 118, pp. 57-86.

문과 잡지에 게재하며 여론전을 벌였다.<sup>22</sup> 하지만 파기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었다고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파기된 재판은 다른 지역의 국왕법원으로 환송되어 재심받았다. 재판 단계마다 재판부와 노예 소유주가 계속 시간을 끌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싸움을 각오해야 했다.

7월왕정 때 벌어진 '자유 재판'의 대부분은 비르지니 재판처럼 여성 노예를 중심으로 가족을 해방하려는 소송이었고 남성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를 이해하려면 노예제하의 젠더와 가족 문제를 봐야 한다. 오늘날 많은 연구는 여성 노예의 노동력 착취, 성 착취, 재생산 능력 착취가 노예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제였다고 말한다.<sup>23</sup> 식민지에서 자녀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라갔기 때문에 노예와 자유민 간의 신분적 분리선은 물론 노예 인구의 재생산까지 여성 노예를 통제하는 데 달려 있었다. 출산과 양육은 노예 어머니에게 이중의 노동과 부담을 지웠고, 주인이 아이를 팔아 버리면 생이별의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여성 노예들 사이에는 피임과 낙태를 위한 민간요법이 널리 퍼졌고, 심지어 영아살해도 일어났다. 기본적으로 고강도의 노동, 영양 결핍, 위생 문제 때문에 두 섬의 출생률은 극단적으로 낮았고, 유아사망률은 매우 높았다.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여성 노예가 다수였고, 그나마 출생률을 보전하는 것은 식민지 출신이나 혼혈

22 SFAE의 기관지인 *Le Bulletin de la Société française pour l'abolition de l'esclavage*(1834-1843)과 *L'Abolitionniste française*(1844-1849), 비세트가 편집한 잡지 *La Revue des colonies*, 자유주의 신문 *La Réforme* 등이 대표적이다.

23 카리브해 노예제와 젠더 연구는 중요한 비교 연구의 주제다. Marrietta Morrissey (1989), *Slave Women in the New World*,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Barbara Bush (1990), *Slave Women in Caribbean Society, 1650-1838*,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Gwyn Campbell, Suzanne Miers and Joseph C. Miller (Eds.) (2007), *Women and Slavery: the Modern Atlantic*, vol. 2,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프랑스의 경우 Bernard Moitt (2001),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1635-1848*,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Arlette Gautier (2010), *Les Sœurs de Solitude*,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여성 노예 일부의 다산이었다.<sup>24</sup>

여성 노예가 결혼하여 부부 가족 사이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흑인법 아래에서 결혼의 성격은 매우 모호했다. 노예는 민법상 결혼은 불가능했으나, 흑인법은 가톨릭 의식에 따른 노예들의 종교적 결혼을 장려했다. 그러나 노예 소유주는 노예들을 결혼시키면 파생될 의무나 자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피하고자 결혼을 허용해 주기를 꺼렸다. 여성 노예들은 노예제의 억압에 거부장제라는 또 하나의 구속을 더하고 싶지 않아 결혼을 피했다. 그들은 지속적인 부부 관계보다 복수의 상대와의 가변적인 관계를 선호했다. 후자의 경우 남성 파트너에 대한 여성의 교섭력이 더 늘어났고 경제적 독립성도 지킬 수 있었다.<sup>25</sup> 7월왕정 이후 정부가 결혼을 장려했지만, 해마다 천 명당 결혼 비율은 노예들의 경우 1명 미만, 유색인 자유민의 경우 5~7명에 불과했다.<sup>26</sup>

그러나 노예 가족은 엄연히 존재했고, 그 주요한 형태는 모계 중심 가족(matrifocal family)이었다. 노예제 사회를 자세히 관찰한 쉴세르가 말했듯이 노예들 사이에 남은 자연적 유대는 어머니와 자녀들 간의 것이었고, 노예 가족은 어머니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비르지니의 투쟁에서 보듯이 이들에게 자유란 무엇보다 헤어질 염려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었다. 부부 가족이 드물고 남성 노예가 부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노예 자녀를 위한 법정 투쟁의 당사자는 절대다수가 어머니와 할머니였다.<sup>27</sup>

24 Moitt (2001), pp. 89-90.

25 Myriam Cottias (2007), "Free but Minor: Slave Women, Citizenship, Respectability, and Social Antagonism in the French Antilles, 1830-90," *Women and Slavery: the Modern Atlantic*, vol. 2, pp. 193-194.

26 Deirdre Lyons (2020), "Work, Family, and Public Order: Slavery, Emancipation, and Family Politics in the Nineteenth-Century French Antilles," Ph. D. thesis, University of Chicago, p. 143.

27 노예제와 모성 문제에 관해서는 Camillia Cowling et als. (2020), *Motherhood, Childlessness and the Care of Children in Atlantic Slave Societies*, London: Routledge.

이러한 가족 형태는 프랑스 정부와 본국의 반노예제 엘리트가 원하는 기독교적·가부장적 가족과 매우 달랐다. 나폴레옹 민법은 가장이 아내와 아이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가지는 가부장제 가족이 사회의 근간이라고 못 박았다. 7월왕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에 노동자 집단이 밀집하면서 심화된 통칭 “사회 문제”였다. 노동자 지구가 슬럼화되고 저임금과 실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급증했다. 이에 대한 7월왕정의 해법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가부장적 핵가족을 만들도록 장려하여 그들을 ‘교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족주의는 식민지 개혁과 노예제 문제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본국 정부는 노예들 사이의 기독교식 결혼을 장려하고 미성년 노예의 종교 교육을 강화하는 친가족적 정책으로 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가족은 SFAE를 비롯한 프랑스의 반노예제 운동이 노예제를 공격하는 핵심적 근거이기도 했다. 그들은 노예제가 가족이라는 미풍양속을 해쳐 식민지 주민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서구 노예제폐지론자들이 생각하는 가족과 자유란 가부장주의적인 것으로 남자가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내 아내는 내 것이고, 내 아이들도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했다.<sup>28</sup> 이들이 보기에 노예제는 아내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소유권을 노예 소유주가 갈취하는 것으로 노예가 결혼을 피하는 것도 당연했다. 그들은 “자기 아내가 강간당할 수도 있고 부권이 노예 소유주의 특권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니그로 노예가 뭣 하러 결혼하겠느냐.”고 맞받아쳤다.<sup>29</sup> 반면 여성 노예는 결혼을 피해 ‘첩살이’(concupinage)와 ‘성적 방종’(libertinage)으로 백인 주인에게 이득을 얻어내려는 타락한 이들로 비쳤다. 노예제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양쪽 모두 여성 노예가 성적으로 방종하고 모성이 부족하

28 이 문구는 영국 노예제폐지 운동에서 프랑스로 넘어와 통용되었다. George Alexander and John Scoble (1844), *Liberté immédiate et absolue, ou esclavage: observations sur le rapport de M. le Duc de Broglie*, Paris: F. Didot frères, p. 20.

29 *L'Abolitionniste français* (1844), no. 1-2, p. 44.

다는 고정관념을 양산했다. 비르지니 재판은 주인, 노예, 백인 노예제폐지론자들 간에 서로 다른 가족 개념과 실천이 부딪치고 수정되는 공간이 될 터였다.

### 3. 비르지니 재판과 판결(1836~1845)

비르지니 재판의 법률적 쟁점이 된 것은 흑인법 제47조였다. 흑인법은 17세기 이후 프랑스 식민지에 확립된 노예제를 사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통 1685년의 왕령을 준거로 한다.<sup>30</sup> 1804년 공포된 나폴레옹의 민법은 이듬해부터 식민지에도 적용되었지만, 노예는 예외였다. 그 결과 식민지에서는 민법과 흑인법이 공존하는 상황이 43년 동안 계속되었고, 7월왕정 아래 식민지 체제를 개혁하는 법령들이 통과되면서 법적 혼란은 가중되었다.<sup>31</sup> 노예제폐지론자들은 몇몇 조항을 들어 흑인법의 기독교적 인도주의를 찬양했지만, 흑인법은 기본적으로 노예의 노동 착취를 극대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예의 인간성을 부분 인정한 것에 불과했다. 식민지 사법부를 장악한 농장주들은 주인의 지나친 횡포를 제약하는 흑인법의 조항들을 오랫동안 무시했다. 흑인법의 몇몇 인도주의적 조항이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은 노예들이 이것을 걸고넘어지면서부터였다. 여기서 “가족의 분리 불가능 조항”이라고 불리던 문제의 제 47조는 “만일 그들이 같은 주인의 권한하에 있다면 남편, 부인, 그들 간의 미성년 자녀를 떼어놓는 압류와 매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다.<sup>32</sup>

30 흑인법에 관한 국내 연구는 문종현(2023), 「흑인법(code noir)의 식민지성: ‘호모 사케르’ 만들기」, 『호모미그란스』 29, pp. 53-80.

31 Jérémy Richard (2007), “Le statut juridique de l’esclave aux Antilles sous l’empire du Code civil (1805-1848),” *Bulletin de la Société d’Histoire de la Guadeloupe* 146-147, pp. 57-91.

32 흑인법의 판본은 여러 개인데 대표적으로 *Le Code Noir ou recueil des reglements rendus*

비르지니에 대한 기록은 1822년 과들루프에 있는 리셰(Richer) 대농장에서 시작한다.<sup>33</sup> 벨쿠르(Bellecourt) 부인 소유의 가내 노예였던 비르지니가 몇 년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그해 벨쿠르 부인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비르지니와 그 어머니 모데스트(Modereste)를 포함한 노예 5명을 해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당시 식민지에서는 주인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가내 노예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언장을 통한 해방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르지니는 그 사이 1826년에 딸 아멜리, 1829년에 아들 시몽을 차례로 낳았는데, 자녀에 관한 내용은 유언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1832년 벨쿠르 부인이 사망하자 비르지니는 2년 후인 1834년 자유민 문서를 받았다. 상속자들이 유언장의 해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예가 허다했음을 생각하면 운이 좋은 편이었으나, 문제는 벨쿠르가의 노예로 남아 있는 자녀들이었다. 아이들의 몸값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비르지니는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원래 노예는 민사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없었지만, 1834년에 정식으로 해방 문서를 받은 비르지니는 유색인 자유민으로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1심법정에 가기 전 비르지니가 어떠한 행정 절차를 밟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법정에서 비르지니의 무기는 흑인법 제47조였다. 비르지니는 자기 혼자만 해방되어 자녀들로부터 분리되었으므로 흑인법 제47조에 따라 두 미성년자 아이도 함께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르지니는 1심법정에서 패소했

---

*jusqu'a present* (1767), Paris: Prault.

33 이하 내용은 다음의 자료에서 재구성했다. 출판물로 Adolphe Gatine (1841), *Affaire Virginie de la Guadeloupe*, Paris: Cordier; Gatine (1844), *Procès Virginie, de la Guadeloupe et arrêt de cassation*, Paris: Cordier; André Dupin (1842), *Réquisitoires, plaidoyers et discours de rentrée, prononcés par M. Dupin*, t. 8, Paris: Joubert, pp. 386-392; Victor Schoelcher (1847), *Histoire de l'esclavage pendant les deux dernières années*, t. 2, Paris: Pagnerre, pp. 44-49; Cyrille Bissette (1845), *Lettres politiques sur les colonies, sur l'esclavage et sur les questions qui s'y rattachent*, Paris: Ebrard Libraire. 신문과 잡지는 *L'Abolitionniste français*, *La Réforme*, *Gazette des Tribunaux*.

고, 1838년 7월 5일 2심법정인 과들루프 국왕법정에서도 패소했다.

이쯤에서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놀랍게도 비르지니는 파기원에 항소하는 길을 찾아냈다. 여기서 법정의 영웅으로 등장한 것이 SFAE 회원이었던 뒤팽과 가틴이다.<sup>34</sup> 복고왕정 시절 자유주의 반대파 의원이었던 뒤팽은 7월혁명 직후 파기원 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비르지니의 소송을 직접 맡은 것은 가틴이었다. 그는 1820년대부터 이장베르와 교류하며 식민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추천으로 1831년 파기원 검사(avocat aux conseils)에 임명되었다. 가틴은 이장베르가 변호했던 비세트와 교류하면서 식민지의 유색인 자유민들과 인맥을 쌓게 되었다. 가틴에게 비르지니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역시 비세트였다. 이를 볼 때 비르지니가 파기원에 항소하는 과정에서 유색인 자유민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1841년 파기원 재판에서 법리적 쟁점은 유언장을 통한 해방이 흑인법 제47조가 규정한 압류·매각과 같은 재산 양도(aliénation)에 의한 가족 분리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였다. 식민지 법정은 비르지니가 자발적으로 해방을 선택하여 자녀들과 떨어진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가틴은 유언장에 의한 해방은 자유를 상속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제47조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마디로 노예 비르지니는 자유민 비르지니에게 증여, 즉 양도되었다.”라고 말했다.<sup>35</sup> 더 나아가 가틴은 실정법 위에 자연법이 있으므로 노예제는 결코 노예에게 남은 인간의 권리 전부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여성은 아이를 세상에

34 뒤팽의 반노예제 경력에 관해서는 Peimane Ghaleh-Marzban (2014), “Le procureur général Dupin et l’abolition de l’esclavage,” *La Cour de cassation et l’abolition de l’esclavage*, pp. 115-125. 가틴에 관해서는 Jean Barthélemy (2007), “Les avocats aux Conseils et l’abolition de l’esclavage: une belle, longue et singulière histoire commune,” *La Cour de cassation et l’abolition de l’esclavage*, pp. 127-155; Jacques Adélaïde-Merlande (1995), “Un avocat défenseur des droits de l’homme: Adolphe Ambroise Alexandre Gatine,” *Bulletin de la Société d’histoire de la Guadeloupe* 106, pp. 96-99.

35 Gatine (1841), p. 6.

출산하는 동시에 어머니이자 그 주인이 된다.”라는 푸펜도르프의 말을 인용하여 비르지니의 모권을 옹호했고, 루소가 『에밀』에서 말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신성한 의무”를 들어 양육권도 주장했다. 뒤팽의 논고 역시 흑인 법이 내포한 기독교적 자비를 찬양하며 가틴과 마찬가지로 해방은 자유를 상속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했다. 결국 파기원은 가틴과 뒤팽의 논변을 거의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보르도 국왕법원에 재심을 맡겼다.

그러나 보르도는 프랑스 제2의 노예무역항으로서 친노예제 세력의 아성이었다. 국왕법원에서 명망이 높았던 부르디용(Imbert de Bourdillon) 판사는 마르티니크에서 오랫동안 검사장을 지낸 친노예제파였다. 보르도 법원은 환송 후 6주 안에 심리해야 하는 사건을 18개월 동안 끈 후 1842년 6월에야 재판을 시작했다. 여기서 나온 판결은 과들루프 국왕법원의 논리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파기원의 주장이 판례가 되면 식민지에 큰 해악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sup>36</sup>

가틴이 과들루프에 있는 비르지니의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면 지나긴 소송 동안 그가 받았을 고통을 상상할 수 있다. 편지에 따르면 벨쿠르가는 소송에 양심을 품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주인은 아이들이 어릴 때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라다 성년이 된 후 주인에게 돌아오면 자유와 예속 사이의 차이를 절감하고 “버릇없는 노예”가 되어 식민지의 사회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7</sup> 그 사이 열두 살이 된 아들 시몽은 주인의 시중을 들다가 말에 차이는 사고를 당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부상이 악화하고 말았다. 주인은 시몽의 몸에 궤양이 생겨 고열로 사망하기 직전이 되자 비로소 비르지니에게 아들을 돌려보내 임종을 지키게 했다. 그 후 주인은 사망 보상금으로 100프랑을 보내며 자기

36 Leticia Gregorio Canelas (2017), *Escravidão e liberdade no Caribe Francês: a alforria na Martinica sob uma perspectiva de gênero, raça e classe (1830-1848)*, Ph. D. thesis, Universidade Estadual de Campinas, p. 293.

37 Gatine (1844), p. 10.

의무를 다했다고 변명했다. 이제 비르지니에게 남은 것은 딸 아멜리뿐이었다.<sup>38</sup>

그러나 비르지니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과기원에 항소했다. 1844년 11월에 벌어진 재판에서 가틴은 노예제를 더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고통 받는 어머니 비르지니에 관한 보다 감상적인 논변을 추가했다. 그는 과들루프에서 1825~1839년 사이 벌어진 3만 7,871건의 노예 판매 중 7,698건이 1~13세의 미성년이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헤어지는 노예 가족의 고통을 상상해 보라고 촉구했다.

구매자를 끌어들이며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 가족이 시장에 끌려가 축 무리처럼 나뉘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할 수 있다면 이 험오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별의 고통을 상상해 보라. 그들의 존재 전체에 고통으로 떨리지 않는 신경은 단 하나도 없고, 그들의 마음 모두 주체할 길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눈물샘조차 마르게 하는 절망의 고통 앞에 굴복하는 순간을.<sup>39</sup>

가틴은 가족의 가치가 소유권보다 위에 있으며 가족을 통해 노예를 교화하는 것이 노예제 폐지를 위한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시도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식민지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SFAE와 개혁주의 언론에서 계속 반복하게 될 비르지니의 상처받은 모성을 강조하며 변론을 끝냈다.

실상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비르지니가 그들이 빼앗으려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치 암호랑이와 암사자가 새끼를 지키듯 모정의 힘으로

38 *Revue des colonies* (1841), vol. 8, p. 441.

39 Gatine (1844), p. 5. 이 내용은 가틴이 영국의 노예제폐지론자들이 프랑스어로 출간한 책에서 빌려온 것이다. Alexander & Scoble (1844), p. 20, p. 51.

아이를 보호한다면. 만일 그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 노예가 사는 산간 지역이나 더 이상 노예가 없는 외국에 간다면... 우리가 어찌겠는가? 만일 그곳이 우리 위대하고 자비로운 나라의 깃발이 휘날리는 곳이라면 공권력의 대리인을 보내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오겠는가? 이 비탄에 빠진 송고한 어머니에게 무슨 별이 가당하겠으며, 어떤 재판관이 그의 신성한 반란에 유죄를 줄 수 있겠는가?"<sup>40</sup>

노예 가족의 이별에 관한 백인 노예제폐지론자의 감상주의적 레토릭은 당시 영국과 미국에 널리 퍼져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법, 권리, 혁명의 전통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비르지니 재판으로 더 감상적인 가족의 레토릭이 도입된 것이다.<sup>41</sup>

1841년의 위대한 판결을 상기하여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가틴의 호소에 답하여 파기원은 재심을 파기했고, 두 번째 파기환송은 승리를 의미했다. 왜냐하면 1837년 4월 1일의 법에 따라 같은 사건이 두 번째로 파기되면 재심을 맡은 법원은 파기원의 법적 해석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르지니는 아직 승리의 열매를 누리지 못했다. 그는 남은 딸과 하루빨리 재회하기를 바랐지만, 벨쿠르가는 재심이 끝나기 전에는 딸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1845년 식민지와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푸아티에 법원으로 환송된 재판에서 비르지니는 마침내 최종적 승리를 얻어냈다. 푸아티에 법원은 파기원의 판결을 모두 인정하는 것에 더해 피고가 비르지니에게 보상금 1만 5,000프랑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예제폐지론자들은 이것이 노예제에 대한 배상의 의미도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상찬했다. 비르지니

40 Gatine (1844), pp. 23-24.

41 이에 관해서는 Gutarra Cordero (2021), *She Is Weeping: An Intellectual History of Racialized Slavery and Emotions in the Atlantic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68-192.

재판은 프랑스 반노예제 운동이 그때까지 얻어낸 성과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자녀와 이별한 어머니,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려는 백인 노예제폐지론자들의 영웅적 노력에 관한 이야기는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SFAE는 이에 힘입어 노예해방을 점진적이고, 가족 친화적이고, 법적인 과정으로 재정의할 수 있었다.<sup>42</sup>

그러나 비르지니 이야기에는 수많은 공백이 남아 있다. 출판된 소송 자료와 일부 편지 자료 외에 비르지니의 가족사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비르지니의 자녀들은 누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것일까? 자녀들이 주인 집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다른 노예나 유색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상황을 달리 이해할 여지가 생긴다. 시몽이 주인집의 사생아였다면 해방 후 상속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때문에 벨쿠르가가 그렇게 완강하게 아이들을 놓아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9년간의 법정 투쟁을 가능케 한 재정적 지원과 법률적 자문은 어디서 온 것일까? 식민지에는 비르지니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 노예들이 허다했지만, 대부분은 1심 법원에 호소하는 첫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비르지니가 기나긴 법정 투쟁 동안 동원했을 다양한 조력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사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사료는 직접 말해주지 않는다.

#### 4. ‘자유 재판’에 얽힌 노예 가족의 다양한 모습

비르지니 재판 자체를 사료로 더 입증할 수 없더라도 여러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존재한다. 비르지니 재판의 결과가 식민지에 알려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노예들의 소송과 청원이 이어졌다. 가틴은

42 *L'Abolitionniste français* (1845), no. 10-12, pp. 649-657; *L'Abolitionniste français* (1846), no. 1-2, pp. 27-34; *L'Abolitionniste français* (1847), no. 5, pp. 413-416.

그 후 여러 여성 노예의 ‘자유 재판’을 맡으며 자유의 수호자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가틴도 인정했듯이 흑인법 제47조를 이용한 ‘자유 재판’의 전략은 백인 노예제폐지론자들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여성 노예들 사이에서 먼저 나타났다. 이 전략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36년 과들루프의 여성 해방 노예 아농신(Annoncine)이 흑인법 제47조에 따라 딸인 열네 살 아델린(Adeline)의 해방을 요청한 때였다. 과들루프의 1심법원과 2심법원은 제47조를 넓게 해석하여 인류애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며 아농신의 손을 들어 주었다. 1834년 인도양의 부르봉 섬에서도 카스린(Catherine)이라는 여성 노예가 자신의 일곱 살 딸을 흑인법 제47조에 따라 함께 해방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sup>43</sup> 이러한 판례가 쌓이자 농장주 세력은 신속하게 식민해군 부를 압박하여 판사들을 친노예제 인사들로 교체했다. 그래서 좌절한 몇몇 여성 노예들이 과기원에 호소한 것이었고,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 바로 비르지니였다.

비르지니 재판이 이어진 9년 동안 이에 관한 뉴스가 식민지 사회에 적잖은 동요를 일으키면서 많은 노예 가족이 흑인법 제47조에 호소하여 자유를 찾고자 했다. 농장주들은 비르지니 재판 소식이 식민지 신문에 실리는 것을 막고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비세트는 어머니와 떨어진 미성년 아이들과 이들 가족의 결합을 가로막는 현지 법정과 당국의 횡포에 관해 자료를 수집해서 과기원 검사장인 뒤팽에게 보냈는데, 이를 통해 노예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sup>44</sup>

흥미롭게도 비르지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먼저 해방한 후 이를 이용해 어머니와 다른 가족의 해방을 요구하는 새로운 전략이 나타났다. 1840년 과들루프의 농장주 라보(Lavau)는 오귀스탱 아메데(Augustin Amédée) 부인에게 부인의 조카인 여덟 살 노예 알시드(Alcide)를 팔

43 Schoelcher (1847), p. 43; Dupin (1842), p. 11; Gatine (1844), pp. 18-19.

44 Cyrille Bissette (1845), “A. M. Dupin, député de la Nièvre, procureur général à la Cour de Cassation, 25 août 1845,” *Lettres politiques sur les colonies*, pp. 93-112.

았다. 아메데 부인은 조카를 해방하고 자유민 증서를 받은 후 1843년에 여전히 라보의 노예로 있는 알시드의 어머니 세세(Cécé)를 흑인법 제47조에 따라 해방하라고 국왕검사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주인, 식민지 법정, 치안 경찰의 방해와 핍박 속에 세세의 계속된 요청은 묵살당했다.<sup>45</sup> 여기서 조카라는 표현으로 봐서 아메데 부인은 가족 중 먼저 해방된 노예일 확률이 높다.

다른 예를 보면 1834년 데지레 그리젤(Désirée Grizel)이 자신의 여성 노예 아네스(Agnès)의 두 살 아들 브루노(Bruno)를 그의 대모인 로제트(Rosette) 양에게 매각했다. 아네스와 다른 자녀 두 명은 여전히 그리젤 양의 노예로 남아 있었고, 다른 자녀 네 명은 각기 다른 주인에게 팔려나갔다. 브루노를 해방한 로제트 양은 이를 이용해 다른 가족의 해방을 국왕검사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46</sup> 브루노가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그 아버지는 주인집 남자이거나 백인 자유민일 것이다. 로제트 양을 통해 보듯 가족은 혈육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 흔하게 나타난 대부, 대모 관계를 통한 유사 친족관계까지 포함했다. 로제트 양은 아네스의 확대가족에 속하거나 그들을 도울 여력이 있는 유색인 자유민일 확률이 높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장기적 관계를 유지한 노예와 자유민의 가족도 있었다. 1839년 과들루프의 대농장주 레스피나스(Lespinasse)는 자기 대농장에서 일한 폰티프(Pontif)에게 채무를 졌다. 그는 품삯과 비용 대신 후자의 아들인 세 살 생생(Saint-Saint, 해방 후 Claude Pontif)을 증여했고, 폰티프는 1842년 소년을 해방했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인 자베스(Zabeth)와 9명의 미성년 자녀는 여전히 노예로 남아 있었다. 폰티프의 요청을 받은 국왕검사는 레스피나스의 상속자인 사위에게 어머니와 자녀들의 해방을 요청했다.

45 Bissette (1845), pp. 94-96.

46 Bissette (1845), pp. 96-97

그러자 상속자는 자베스가 이미 2년 전부터 자유를 요구하며 자기 오두막에서 매우 독립적으로 살고 있으니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협상을 거부했다.<sup>47</sup> 아들이 혼혈이라는 기록으로 봐서 폰티프는 백인 노동자일 가능성이 있고, 자베스와 장기적 관계를 맺고 많은 아이를 낳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아이들 모두의 몸값을 내거나 비르지니처럼 기나긴 소송을 택할 여력이 없다면 자베스처럼 소극적 농성을 벌일 수도 있었다.

이처럼 여전히 자유를 향한 문턱은 높기만 했다. 마르티니크 식민지 치안대 대대장이자 SFAE의 통신원인 프랑스(Joseph France)는 자신이 입수한 치안경찰의 보고서와 회의록 133개를 모아서 노예들에 대한 농장주들의 자의적 법 집행과 잔인한 체벌에 관해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비르지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백 명은 더 있다. 다만, 그들이 과기원에 호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소하려면) 먼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부당하게 노예로 소유된 자유민들은 본래 너무 가난하기 때문이다.”<sup>48</sup> 소송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사건 접수 비용을 내야 했고, 돈이 없다면 빈곤 증명서를 받아 이를 면제받고 법률 자문을 해 줄 무료 변호인을 배당받아야 했다. 그러나 노예 편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국왕검사부터 빈곤 증명서를 발행해 줘야 할 시장까지 모두 농장주의 편이라 대부분의 시도는 불발로 끝났다. 비르지니 재판이 끝나기까지 과기원까지 온 다른 재판은 한 건뿐이었다.

1844년 이후 식민지의 양상은 다소 달라졌다. 비르지니 판결과 1845년 마코 법으로 용기를 얻어 가족의 결합을 시도하는 노예들이 더 많아졌다. 역사가들은 마코 법이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법이라 노예제 폐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지만, 노예들은 마코 법으로 생겨난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다. 마코 법은 속량을 통한 해방을 적극 장려하여 노예가 몸값을 치르고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주인이 의무적으로 응하게 하고 속량을 위한

47 Bissette (1845), pp. 100-102.

48 Joseph France (1846), *La vérité et les faits de l'esclavage à nu*, Paris: Moreaux, pp. 29-30.

정부 보조금도 책정했다. 양편이 협의해서 몸값을 조정했고, 조정에 실패하면 조정위원회가 열려 가격을 결정했다. 농장주 편인 위원회는 시세보다 몸값을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었고, 노예 중 보조금을 받지 않고 몸값을 치를 수 있는 이들은 손꼽을 정도였다. 가족이 가진 자원을 다 끌어모아도 한두명 정도의 속량만 가능했다.<sup>49</sup> 그에 따라 먼저 아이나 어머니의 몸값을 치러 해방한 후 흑인법 제47조에 따라 다른 가족을 해방하려는 시도가 더 활성화되었다. 반대로 식민지 법원과 농장주의 저항은 더 거세졌다. 두 섬의 국왕법원은 파기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노예들 편에서 그들의 해방을 주관해야 할 검사장과 국왕검사는 노골적으로 태업을 일삼고 속량을 위한 국가 보조금을 내 주기를 거부했다.<sup>50</sup>

하지만 비르지니 판결 이후 온갖 어려움을 뚫고 파기원까지 오는 가족들의 수는 더 늘어났다. 1845년 10월 가틴은 비르지니 재판이 식민지에 엄청난 희망을 불러일으켜 식민지 전체에서 편지가 쇄도한다고 전했다. 마르티니크에서 편지를 보낸 이는 비르지니 판결은 “해방의 법”이라 불릴 만하다고 상찬하며 자신은 이미 어머니와 형제자매의 자유를 요구하는 미성년 해방 노예들의 요구 32건을 맡았다고 썼다.<sup>51</sup> 이제 법리적 쟁점은 ‘속량을 통한 분리도 흑인법 제47조가 정의한 재산 이전에 해당하는가’로 옮겨 갔

49 Frédéric Charlin (2009), “La nature juridique de l’affranchissement de l’esclave dans les colonies françaises,” *Société d’histoire du droit*; CERDHAP, May 2009, Grenoble, France, pp. 241–270; Bernard Moitt (2005), “Freedom from Bondage at a Price: Women and Redemption from Slavery in the French Caribbean in the Nineteenth Century,” *Slavery and Abolition* 26(2), pp. 247–256; Bernard Moitt (2007), “Pricing Freedom in the French Caribbean: Women, Men, Children, and Redemption in the 1840s,” *Women and Slavery*.

50 식민지 과두정의 저항에 관해서 Schoelcher (1847), pp. 41–134; Maximilien Just (1847), *Les magistrats des colonies depuis l’ordonnance du 18 juillet 1841* (Ed. by Victor Schoelcher), Paris: Pagnerre; J. B. Rouvellat de Cussac (1845), *Situation des esclaves dans les colonies françaises: urgence de leur émancipation*, Paris: Pagnerre.

51 *La Réforme*, 30 oct. 1845. Schoelcher (1847), pp. 49–51에서 재인용.

다. 식민지 국왕법원은 속량은 노예가 자발적으로 가족과의 분리를 선택한 것이므로 흑인법 제4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한 반면, 가틴은 노예가 자유를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며 속량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해방 역시 제47조의 확대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중 가틴이 파기원에서 맡은 몇몇 사건을 보면 노예들의 대를 이은 확대가족의 면모, 그리고 식민지 과두정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맞서 노예들이 활용한 다양한 전략이 드러난다. 먼저 앙리에트(Henriette) 재판을 보자. 1841년 마르티니크에서 라비송(Lavison) 부부와 함께 살던 몽테뉴-라카유(Montaigne-Lacaille) 부인이 세상을 떠나며 자신이 소유한 여성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부탁했다. 여기에는 앙리에트와 마리(Marie) 자매, 둘 중 하나의 딸인 쉬잔(Suzanne), 쉬잔이 낳은 세 명의 어린 딸이 포함되었다. 몽테뉴-라카유 부인은 노예들에게 생활과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국 출신의 남편은 고인의 뜻에 따라 즉시 이들을 해방했지만, 당시 자리에 없었던 식민지 출신의 부인이 돌아온 후 앙리에트의 주인이 진 채무 대신 노예들을 압류하겠다고 해방을 번복했다. 절차상의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1심법정과 국왕법정 모두 라비송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1845년 파기원에서 파기환송 후 1847년 파리 국왕법원에서 해방을 확정하기까지 그들은 노예로 남아 주인의 겁박 속에 살아야 했다.<sup>52</sup>

마리 생트 플라통(Marie Sainte Platon) 재판은 총 14명의 자유가 걸린 재판으로서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했다. 마르티니크의 대농장에 살던 노예 마리 생트와 프랑수아(François)는 사실혼 관계로 1816년에 낳은 첫째부터 1845년에 태어난 손녀까지 총 13명의 아이를 가졌다. 1840년 마리 생트는 자신의 몸값을 갚고 46살에 해방되어 마리 생트 플라통이 되었다. 마리 생트가 살던 대농장은 17명이 공동 소유했고, 대농장 노예는 부동산의

52 Adolphe Gatine (1845a),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Mémoire pour 1. Henriette, 2. Marie, 3. Suzanne et ses trois enfants: Amélie, Honorine, Marie-Claire*, Paris: Cordier; Schoelcher (1847), pp. 82-88.

일부로 간주되어 역시 공동 소유물이었다. 1842년 마리 생트는 그의 해방에 관여했던 공동 소유주 한 명의 허락을 받고 프랑수아와 사제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1846년 마리 생트는 자유민과 결혼한 노예는 해방된다는 1839년 6월 11일의 법령과 흑인법 제47조에 따라 프랑수아와 아이들 총 14명의 자유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정에서는 승소했지만, 공동 소유주 중 일부가 종교적 결혼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해 국왕법원에서 패소했다. 가틴은 파기원에서 이들을 대리하여 종교적 결혼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성스러운 소송, 종교의 비호 아래 법적으로 성립된 결혼의 결과로 생긴 가족의 어머니가 남편과 아이들의 자유를 요구하는 소송을 물리치려고 그토록 애를 썼다니 슬픈 광경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sup>53</sup> 이처럼 이전에 노예들이 기피하던 결혼도 해방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마르티니크의 카스린 레오나르(Catherine Léonard) 사건이 있다. 카즈네브(Cazeneuve) 부부의 여성 노예인 카스린은 자신과 자녀 11명의 해방을 위해 오래된 세례 증명서를 이용했다. 카스린은 뒤플레시-브와쟁(Duplessy-Voisin) 선장의 부인이 소유한 몰라토 여성 노예에게서 태어났다. 선장은 카스린을 바로 해방하고 1791년 정식 세례를 거쳐 카스린 레오나르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카스린은 선장의 친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카스린의 정식 해방 문서가 없고 선장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를 계속 노예로 소유해서 카스린도 그동안 노예로 살았다. 1841년 식민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카스린의 대리인은 당시의 법령과 상황으로 볼 때 신부가 세례를 줬다는 사실은 카스린이 유색인 자유민임을 인지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자유민인 카스린은 그동안 현 주인에게 불법적으로 소유되었던 것이고, 카스린이 자유민이라면 자녀 11명도 자유

53 Adolphe Gatine (1847), *Cour de Cassation: Causes de liberté: Marie-Sainte Platon de la Martinique: Réclamant les quatorze libertés de ses enfants ou petits-enfants*, Paris: Cordier, pp. 15-16.

민의 자녀이자 흑인법 제47조의 적용을 받아 이중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했다. 마르티니크 국왕법정은 카스린이 자유민 신분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카스린은 파기원에 항소하여 가틴의 변호로 1845년에 원심 파기를 얻어냈다.<sup>54</sup>

코랄리(Coralie) 사건은 긴 시간 동안 사방으로 흩어진 가족을 모으려는 어머니의 노력을 보여준다. 1820년 코키유 발랑쿠르(Coquille Valencourt) 부인은 여성 노예 코랄리와 그의 어린 딸 네 명을 데리고 있었다. 부인은 이때 코랄리와 딸 두 명만 따로 블랑세(Blanchèt) 부인에게 팔았고, 블랑세 부인은 다시 코랄리만 다른 주인에게 팔았다. 코랄리는 몸값을 모아 1823년에 해방되었고, 1826년에 자유 문서를 받았다. 그 사이 블랑세 부인이 사망해서 그가 소유했던 두 딸은 상속자들이 각기 다른 주인에게 팔아버렸다. 발랑쿠르 부인이 데리고 있던 다른 두 딸 중 한 명도 다른 주인에게 팔려갔다. 그 사이 딸들이 출산함에 따라 코랄리에게는 손자도 두 명 생겼다. 코랄리는 1844년 뿔뿔이 흩어진 3대 가족을 모으기 위해 소송을 했지만, 식민지 법정은 그 시점에서 자녀들은 이미 미성년이 아니고 코랄리는 스스로 속량했기 때문에 흑인법 제4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1847년 코랄리는 파기원에 항소했고, 가틴은 비르지니 재판에서 확인된 가족 분리 불가능의 원칙은 보편적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5</sup>

1847년 가틴은 통계 자료를 내면서 프랑스 전체 식민지에서 총 34가족 120명이 비르지니 판결을 이용해 파기원에서 자유를 찾았고, 식민지에서 이에 영향을 받아 자유를 찾은 이도 1,2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sup>56</sup> 1847년

54 Adolphe Gatine (1845b), *Nombreuses liberations au cours de l'annee judiciaire 1844-1845*, Paris: Cordier, pp. 17-20.

55 가틴이 1847년 1월 10일 *La Réforme*에 기고한 글. Schoelcher (1847), pp. 54-62에서 재인용; Bissette (1845), pp. 106-109; *L'Abolitionniste français* (1846), no. 6, pp. 571-574.

56 Gatine (s.d.), *Causes de liberté: Résultats de l'arrêt Virginie*, Paris: le Cordier.



지도 못하고 주인의 폭력과 억압에 시달렸다. 1845년 마르티니크의 치안대 중대장이 편지로 밝힌 바에 따르면, 리비에르살레에 사는 폴릭센느(Polixène)라는 여성 노예가 주인의 채찍질로 크게 다친 채 행정 수도인 포르드르와얄까지 20km 넘는 길을 걸어와 보호를 요청했다. 중대장은 “중세를 떠올리게 하는 폭력적 행위”에 치를 떨며 폴릭센느를 보호하려 했으나, 며칠 후 그의 주인이 지역 당국의 허락을 받아 헌병대를 동원해 다시 대농장으로 끌고 가 버렸다. 폴릭센느는 자신에게 이미 해방된 여덟 살 아들이 있으니 흑인법 제47조에 따라 어머니도 해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사장은 단호히 거부했다. 폴릭센느는 대농장에 도착하자마자 형틀에 묶여 다시 한번 심한 체벌을 당했다.<sup>60</sup>

다른 예로 1845년 과들루프에 사는 제롬 노엘(Gérôme Noël)은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생프리(Saint-Prix)라는 노예 소년이 해방되었고, 자신은 그의 후견인으로서 생프리의 어머니 카스린(Catherine)의 해방을 요구하며 9개월 동안 매주 국왕검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국왕검사는 소송을 제기해 주지 않았고, 그 사이 앙심을 품은 주인은 계속 카스린에게 체벌을 가했다. 법무부에서 대답이 없자 노엘은 다시 국왕검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에 따르면 카스린은 주인에게 사지를 벌려 묶인 채 채찍질 당하는 것( quatre-piquets)까지 포함하여 매일 심한 가혹 행위에 시달려 장애까지 얻었다. 그러나 카스린은 굴하지 않고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 정의를 호소했다. 그 사이 카스린은 18개월을 기다린 끝에 겨우 1심법정의 관문을 통과했으나, 주인과 친분이 있는 검사장은 카스린은 국가 보조금으로 속량하고 두 살, 여섯 살, 여덟 살인 다른 자녀 세 명은 그대로 노예로 두자는 중제안을 냈다. 분노한 카스린은 자신은 흑인법 제47조에 의해 이미 자유민이므로 속량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어린 세 자녀 역시 함께 해방되어야 한다며 제대로 재판해 달라

60 France (1846), pp. 168-169.

고 요청했다.<sup>61</sup> 이처럼 파기원에서 성공한 극소수의 사례들 뒤에는 재판정까지 가 보지도 못한 이들, 해방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에게 온갖 학대를 당한 이들이 있었다.

## 5. 결론: 노예 가족과 여성 노예의 끈질긴 투쟁

이 재판들 속에서 기존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노예 가족의 모습이 일부 드러난다. 가족이 깨어져 노예들이 항의하고 소송을 걸었을 때에야 비로소 노예 가족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족은 결혼이 필수적이지 않고, 모계 중심적이고, 혈연을 뛰어넘는 유사 친족관계로 확대된 경우가 많았다. 몇몇 재판에서 보듯 먼저 해방된 미성년 자녀를 이용해 어머니와 다른 가족의 해방을 요구하는 경우 요청을 대리해 줄 후견인이 필요했고, 여기서 모계를 중심으로 한 확대가족, 비혼 상태의 부부, 대부와 대모, 경제공동체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조력의 네트워크를 발견할 수 있다.<sup>62</sup> 더 넓게 보면 아메리카의 노예제 사회 연구는 실상 노예들이 아주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적 가족·친족 네트워크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가족은 해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짜고 노예제 속에서 생존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sup>63</sup>

여기서 살펴본 대부분의 ‘자유 소송,’ 특히 성공한 소송은 여성이 제기

61 Schoelcher (1847), pp. 113-115.

62 이에 관한 분석으로 Arlette Gauthier (2000), “Les familles esclaves aux Antilles françaises, 1635-1848,” *Population* 55(6), pp. 975-1001; Canelas (2017); Lyons (2020).

63 쿠바와 리우데자네이루에 관한 연구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 여성 노예들이 자녀와 친족 해방을 위해 나서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때 가족은 혈연보다 더 넓은 네트워크를 의미했다. Camillia Cowling (2013), *Conceiving Freedom: Women of Color, Gender, and the Abolition of Slavery in Havana and Rio de Janeiro*,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한 것이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예 간의 결혼이 드물고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는 어머니와 자녀 관계였고, 여성 노예가 해방되는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에 적합했다. 예전의 역사가들은 여성 노예가 주인들과의 감정적·성적 유대 관계 때문에 더 쉽게 해방을 얻었다는 일반론을 폈고, 그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해방을 위한 여성 노예들의 노력이 평가절하되었다. 실상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주인과 교섭하고, 몸값을 모아 가격을 협상하고, 실패하면 당국에 호소하고,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에 조력을 구하고, 법과 문서를 이용하는 과정은 엄청난 노력, 지성, 그리고 다년간의 끈기를 요구하는 고도의 저항 행위였다. 노예로 살면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노예를 사물화하려는 노예제에 대항해 인간적 존엄을 지키려는 투쟁이었다.

백인들은 이러한 노예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할 수 없었고,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노예제가 정상적인 가족 형태를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여성 노예는 아프리카인의 ‘인종적’ 특성 때문에 성적으로 방종하고, 노예와 결혼하기보다 백인 남성의 첩이 되기를 바라는 타락한 존재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의 자유를 요구하며 파기원에 온 소송 당사자의 절대다수는 어머니와 할머니였다. 이에 따라 가틴과 같은 노예제폐지론자들은 법적 결혼과 가부장적 가족의 정의를 잠시 내려놓고 모성을 중심으로 가족을 재정의해야 했다. 그 결과 가틴의 변론과 반노예제 언론에서 여성 노예의 모습은 모권을 박탈당한 희생자, 신성한 모권을 수호하는 어머니로 재정의되었다.

이와 함께 ‘자유 재판’을 보면 유색인 자유민 공동체라는 또 다른 조력의 네트워크가 드러난다. 파기원에까지 항소하고 본국 노예제폐지론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은 교육받지 않은 해방 노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이라 유색인 자유민 엘리트의 도움이 있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비르지니 재판에서 가틴이 비세트로부터 부탁받았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유색인 자유민 공동체가 그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 유색인 자유민들

은 미성년 노예의 후견인이 되어 가족 분리 소송을 대리하거나, 노예가 몸값을 다 모아도 백인 주인이 해방을 위한 행정 절차를 꺼릴 때 대신 이들을 사 와서 해방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여러 소송 자료에서 파편적으로 언급된 사실을 통해 ‘자유 재판’에 연결된 이들의 횡대서양적(transatlantic) 네트워크도 확인할 수 있다. 가틴은 증거 자료로 과들루프 법관의 편지, 비세트가 제공한 식민지 현지 정보, 비르지니의 현지 변호인의 증언 등을 인용했다. 가틴의 식민지 정보원이 비세트라면, 쉴세르의 정보원은 유색인 변호사인 포리-파피(Pierre-Marie Pory-Papy)였다. 쉴세르는 그를 “사회 계층의 최상급까지 올라갔으나 자신이 노예계급 출신임을 잊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포리-파피는 마르티니크의 1심법정에서 노예 가족의 소송을 대리하고 그들을 쉴세르와 같은 본국 노예제폐지론자들과 연결해 주었다.<sup>64</sup>

이 연구는 비르지니 재판과 이와 유사한 ‘자유 재판’을 통해 프랑스 법률가와 노예제폐지론자들의 담론 뒤에 가려진 여성 노예와 노예 가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7월왕정이 노예제 개혁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키자 여성 노예들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고, 식민지와 본국의 다양한 법적·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을 지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가족과 모성이 노예들의 경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유의 실천과 연결되었는지 들여다보고, 노예제와 같은 억압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저항, 자유, 주체성의 개념을 가족과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다. 여성 노예가 직접 발화한 자료를 찾기는 매우 힘들지만, 소송과 같이 그들이 노예제에 맞서 파열음을 내는 순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자유를 향한 그들의 열망과 마주할 수 있다.

쉴세르, 가틴, 비세트, 포리-파피 등 비르지니와 여성 노예를 도왔던 노예제폐지론자들은 1848년의 노예해방령 이후 식민지의 위임관이나 하원의

64 *La Réforme*, 8 juin 1846, Schoelcher (1847), p. 93에서 재인용. 포리-파피는 노예해방 후 쉴세르와 식민지 하원의원으로 공동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원이 되어 '해방자'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자유 재판'의 당사자인 여성 노예들의 이름은 그들의 경력을 장식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2월혁명으로 수립된 제2공화국은 해방 노예를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의 복원과 국가의 가부장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해방된 유색인 여성들을 새롭게 억압했다. 오늘날 프랑스 학계에서 발간되는 파기원과 노예제에 관한 연구들은 여전히 프랑스 법원의 해방 전통을 찬양하고 이제는 잊힌 이장베르, 가틴, 뒤팽과 같은 인권의 선구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계보를 쓴다면 거기에는 본국의 시혜자들뿐만 아니라 비르지니처럼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도 인간으로 살고자 애썼던 어머니들의 자리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당대 신문과 잡지

*L'Abolitionniste français*

*La Gazette des Tribunaux (Paris)*

*La Revue des colonies*

*La Réforme*

-출판된 사료

Alexander, George, and John Scoble (1844), *Liberté immédiate et absolue, ou esclavage: observations sur le rapport de M. le Duc de Broglie*, Paris: F. Didot frères.

Bissette, Cyrille (1845), *Lettres politiques sur les colonies, sur l'esclavage et sur les questions qui s'y rattachent*, Paris: Ebrard Libraire.

Dessalles, Pierre (1980-1987), *La Vie d'un colon à la Martinique au xix<sup>e</sup> siècle*, 4 vols., Fort-de-France: Désormeaux.

Dupin, André (1842), *Réquisitoires, plaidoyers et discours de rentrée, prononcés par M. Dupin*, t. 8, Paris: Joubert.

- France, Joseph (1846), *La vérité et les faits de l'esclavage à nu*, Paris: Moreaux.
- Gatine, Adolphe (1841), *Affaire Virginie de la Guadeloupe*, Paris: Cordier.
- Gatine, Adolphe (1844), *Procès Virginie, de la Guadeloupe et arrêt de cassation*, Paris: Cordier.
- Gatine, Adolphe (1845a),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Mémoire pour 1. Henriette, 2. Marie, 3. Suzanne et ses trois enfants: Amélie, Honorine, Marie-Claire. Esclaves réclamant leur liberté. Contre les sieur et dame Rufz-Lavision de la Martinique*, Paris: Cordier.
- Gatine, Adolphe (1845b), *Nombreuses libérations au cours de l'année judiciaire 1844-1845*, Paris: Cordier.
- Gatine, Adolphe (1846), *Mémoire à consulter: Esclavage — réclamations de liberté*, Paris: E. Duverger.
- Gatine, Adolphe (1847), *Cour de Cassation: Causes de liberté. Marie-Sainte Platon de la Martinique. Réclamant les quatorze libertés de ses enfants ou petits-enfants*, Paris: Cordier.
- Gatine, Adolphe (s.d.), *Causes de liberté: Résultats de l'arrêt Virginie*, Paris: le Cordier.
- Just, Maximilien (1847), *Les magistrats des colonies depuis l'ordonnance du 18 juillet 1841* (Ed. by Victor Schoelcher), Paris: Pagnerre.
- Le Code Noir ou recueil des reglements rendus jusqu'à present* (1767), Paris: Prault.
- Ministère de la marine et des colonies (1851), *Tableaux de population, de culture, de commerce et de navigation, formant pour l'année 1847*, Paris: Imprimerie Royale.
- Rouvellat de Cussac, J. B. (1845), *Situation des esclaves dans les colonies françaises: urgence de leur émancipation*, Paris: Pagnerre.
- Schoelcher, Victor (1833), *De l'esclavage des noirs et de la législation coloniale*, Paris: Paulin.
- Schoelcher, Victor (1847), *Histoire de l'esclavage pendant les deux dernières années*. t. 2, Paris: Pagnerre.

## 2차 자료

- 권윤경(2013), 「프랑스 혁명과 아이티 혁명의 역사적 유산,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지 개혁론: 프랑수아앙드레 이장베르의 정치 경력을 통해 본 프랑스의 노예제폐지론, 1823-1848」, 『프랑스사 연구』 28, pp. 85-121.
- 권윤경(2013),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에서 프랑스로: 시릴 비세트의 반노예제 투쟁에서 나타난 횡대서양적 해방의 기획, 1823-1849」, 『서양사론』 118, pp. 57-86.
- 문종현(2023), 「흑인법(code noir)의 식민지성: '호모 사케르' 만들기」, 『호모미그란스』 29, pp. 53-80.
- 줄리어스 스콧(2022), 권윤경 역, 『모두의 바람: 아이티 혁명의 시대 아프리카-아메리카 혁

명의 조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Adélaïde-Merlande, Jacques (1995), "Un avocat défenseur des droits de l'homme: Adolphe Ambroise Alexandre Gatine," *Bulletin de la Societe d'histoire de la Guadeloupe* 106, pp. 96-99.
- Barthélemy, Jean (2007), "Les avocats aux Conseils et l'abolition de l'esclavage: une belle, longue et singulière histoire commune," *La Cour de cassation et l'abolition de l'esclavage*, pp. 127-155.
- Bush, Barbara (1990), *Slave Women in Caribbean Society, 1650-1838*,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Campbell, Gwyn, Suzanne Miers and Joseph C. Miller (Eds.) (2007), *Women and Slavery: the Modern Atlantic*, vol. 2,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 Canelas, Leticia Gregorio (2017), *Escravidão e liberdade no Caribe Francês: a alforria na Martinica sob uma perspectiva de gênero, raça e classe (1830-1848)*, Ph. D. thesis, Universidade Estadual de Campinas.
- Charlin, Frédéric (2009), "La nature juridique de l'affranchissement de l'esclave dans les colonies françaises," *Société d'histoire du droit: CERD'HAP*, May 2009, Grenoble, France, pp. 241-270.
- Chevalier, Pierre, and Peimane Ghaleh-Marzban (Eds.) (2014), *La Cour de cassation et l'abolition de l'esclavage*, Paris: Dalloz.
- Christie, Nancy, Michael Gauvreau and Matthew Gerber (Eds.) (2020), *Voices in the Legal Archives in the French Colonial World: "The King is Listening"*, London: Routledge.
- Cordero, Gutarra (2021), *She Is Weeping: An Intellectual History of Racialized Slavery and Emotions in the Atlantic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ttias, Myriam (2007), "Free but Minor: Slave Women, Citizenship, Respectability, and Social Antagonism in the French Antilles, 1830-90," *Women and Slavery: the Modern Atlantic*, vol. 2, pp. 193-194.
- Cowling, Camillia (2013), *Conceiving Freedom: Women of Color, Gender, and the Abolition of Slavery in Havana and Rio de Janeiro*,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Cowling, Camillia, et als. (2020), *Motherhood, Childlessness and the Care of Children in Atlantic Slave Societies*, London: Routledge.
- Fabre, Martine (2011), "La place de la Cour de cassation dans la construction d'un droit aux colonies", *Clio@Themis* 4, <http://journals.openedition.org/cliothemis/1385> (접속일: 2024. 12. 10.)
- Fuentes, Marisa J. (2016), *Dispossessed Lives: Enslaved Women, Violence and the Archiv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Gauthier, Arlette (2000), "Les familles esclaves aux Antilles françaises, 1635-1848,"

- Population* 55(6), pp. 975-1001.
- Gautier, Arlette (2010), *Les Sœurs de Solitude: femmes et esclavage aux Antilles du XVIIIe au XIXe siècle*,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 Ghaleh-Marzban, Peimane (2014), "Le procureur général Dupin et l'abolition de l'esclavage," *La Cour de cassation et l'abolition de l'esclavage*.
- Görtl, Teresa (2024), "Trials of Enslavers in Former French Colonies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Testimonies of the Enslaved between Gratitude and Fear," *Slavery & Abolition* 45(1), pp. 117-134.
- Hartman, Saidiya (2008), "Venus in Two Acts," *Small Axe* 12(2), pp. 1-14.
- Jean, Jean-Paul (2021), "La Cour de cassation et les juridictions coloniales avant l'abolition de l'esclavage," *Histoire de la justice* 31(1), pp. 127-142.
- Jennings, Lawrence C. (2000), *French Anti-Slavery: the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in Fr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Deirdre (2020), "Work, Family, and Public Order: Slavery, Emancipation, and Family Politics in the Nineteenth-Century French Antilles," Ph. D. thesis, University of Chicago.
- Lyons, Deirdre (2024), "'They Are Free with Me': Enslaved and Freed Women's Antislavery Lawsuits in the French Antilles, 1830-1848," *French Historical Studies* 47(3), pp. 365-397.
- Moitt, Bernard (2001),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1635-1848*,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oitt, Bernard (2005), "Freedom from Bondage at a Price: Women and Redemption from Slavery in the French Caribbean in the Nineteenth Century," *Slavery and Abolition* 26(2), pp. 247-256.
- Moitt, Bernard (2007), "Pricing Freedom in the French Caribbean: Women, Men, Children, and Redemption in the 1840s," *Women and Slavery: the Modern Atlantic*.
- Morrissey, Marrietta (1989), *Slave Women in the New World*,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Motylewski, Patricia (1998), *La Société française pour l'abolition de l'esclavage*, Paris: L'Harmattan.
- Peabody, Sue (1996), *"There Are No Slaves in France": The Political Culture of Race and Slavery in the Ancien Régi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abody, Sue (2017), *Madeleine's Children: Family, Freedom, Secrets, and Lies in France's Indian Ocean Colon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 Jérémy (2007), "Le statut juridique de l'esclave aux Antilles sous l'empire du Code civil (1805-1848)," *Bulletin de la Société d'Histoire de la Guadeloupe* 146-147, pp. 57-91.
- Schmidt, Nelly (2000), *Abolitionnistes de l'esclavage et réformateurs des colonies: 1820-1851*,

Paris: Karthala.

Scott, Rebecca (2011), "Slavery and the Law in Atlantic Perspective: Jurisdiction, Jurisprudence, and Justice," *Law and History Review* 29(4), pp. 915–924.

Scott, Rebecca, and Jean M. Hébrard (2012), *Freedom Papers: An Atlantic Odyssey in the Age of Emancip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cully, Pamela, and Diana Paton (2005), *Gender and Slave Emancipation in the Atlantic Worl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White, Sophie (2019), *Voices of the Enslaved : Love, Labor, and Longing in French Louisian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원고 접수일: 2025년 1월 18일, 심사완료일: 2025년 2월 3일, 게재 확정일: 2025년 2월 13일

## ABSTRACT

# The *Affaire Virginie* and the Legal Struggles of Enslaved Women

Kwon, Yun Kyoung\*

Freedom Suits and Slave Families  
under the July Monarchy, 1832–1847

France abolished colonial slavery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but Napoleon later reversed this decision and reinstated slavery, ultimately leading to Haiti's independence in 1804. Other French colonies, however, had to wait until the final abolition of slavery in 1848. Before the final abolition, enslaved men and women continued to resist and fight for freedom in their daily lives. During the July Monarchy (1830–1848), the government introduced various legal reforms to promote manumission as a step toward gradual emancipation. Many enslaved women took advantage of these initiatives to secure freedom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often employing litigation as a strategy. One notable case was the *Affaire Virginie* (1834–1845), in which Virginie, a formerly enslaved woman in Guadeloupe, leveraged Article 47 of the *Code Noir* — which prohibited the separation of enslaved families — to win her children's freedom. After losing in the colonial courts, which were dominated by plantation owners, Virginie appealed to the Court of Cassation, the highest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urt in Paris, gaining support from French abolitionists along the way. Her victory had far-reaching consequences in the colonies, inspiring a wave of similar “freedom suits,” most of which were initiated by enslaved women. This article reconstructs the social and legal context of the *Affaire Virginie*, situating it at the intersection of judicial systems regulating slavery, the abolitionist movement in France, and the gendered dynamics of family under slavery. It examines how enslaved women navigated legal contradictions between the metropole and the colonies, using these tensions to carve out opportunities for their families’ freedom.

**Keywords** *Affaire Virginie*, Slavery, Gender, Guadeloupe, Martinique, July Monarchy, Cour of Cassation, Enslaved Women, Slave Family

